

스테로이드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손상이 상해사고인지의 여부에 대한 소고

(A Study on Whether or not the bodily Injury
caused by Steroid drugs side effect)

임동섭*

Dongsup, Lim

<국문초록>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재해’의 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의 ‘상해’는 개별 사안별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된 경우 법원의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서는 모두 급격성과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을 충족하는 ‘상해’ 사고로 보았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M87.1로서 생명보험의 재해사고(S00~Y84)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약물효과 외에 의학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일정량 이상 투여할 경우 발생가능한 여러 부작용 중 하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견치 못한 사고로 볼 수 없어 급격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약물 투여의 결과로 발생가

* 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16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3016017).

투고일:2016. 7. 28. 심사일:2016. 8. 11. 게재확정일 2016. 8. 21.

능한 부작용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약물이 투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나 뇌부종 등의 질병치료를 위해 장기간 투여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사고로 보기 어렵다.

※ 국문 주제어 : 상해, 재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신체손상, 약물부작용, 의료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면책사유

I. 들어가는 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兼營)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보험 상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에게 판매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3보험의 보험상품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구성되고 최근 10년간 손해보험업의 성장주축이 되어왔다.

생명보험상품 또는 손해보험상품의 특별약관 또는 기본계약의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들은 생명보험의 주계약에 여러 가지 재해관련 특약과 질병관련 특약을 부가하거나 손해보험의 화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에 다양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의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한다. 생명보험의 ‘재해’라는 개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특정 사고와 제1군 감염병까지도 포함하지만, 손해보험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상해사고인 경우를 별도로 정해놓은 대신에 일정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를 상해사고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상해’의 정의를 ‘질병과 대립된 개념으로서 질병이 아닌 건강훼손의 상태라는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한다.¹⁾

그러나 ‘상해’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충족 여부에만 매몰된 채 ‘상해사고’와 ‘신체손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히 신체 외부에서 모기에 물렸다는 원인사고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증상까지를 모두 ‘상

1) 심문보, 상해보험사정실무,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 1988, p.26.

해' 사고로 인정해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상해사고' 인지의 여부를 따질 때에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급격, 우연, 외래의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되 결과의 발생, 즉 '신체의 상해'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상해보험 약관은 별도의 표준약관 없이 존속되어 오다가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표준약관의 제정은 기존에 없던 보험약관을 새로이 만들어낸 과정이 아니고 장기손해보험 등에서 활용해오던 보험약관을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의 여건에 맞게 변경시킨 것이다. 가장 큰 변화라면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요건이 아니라 '면책사유'의 대폭 수정에 따라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다.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서 삭제된 대표적인 면책사유로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이다. 이 중에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의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의 질병 입원형·통원형의 면책사유로 포함되어 있으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부분은 사라지면서 급증하는 의료사고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뇌부종 치료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투여한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상해사고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와 고등법원 판례가 있으나, 모두 상해보험의 기본 요건에만 매몰된 나머지 상해사고의 본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테로이드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손상이 상해사고인지의 여부와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문제의 제기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생명보험의 재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재해’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재해’의 의미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

또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재해’ 사고로 보지 않지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는 ‘재해’로 보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추가 단서조항을 통해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재해사고로 보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재해’에는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의료과오(medical negligence)’와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이 포함되며, 치료당시에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나 추후 발생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까지도 재해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렇게 생명보험의 ‘재해’는 진료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신체손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상해사고’인지의 여부는 개별 보험사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의학상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투여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무혈성 괴사가 ‘상해사고’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 37183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

례 2012. 7. 24. 조정번호 제2012-19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3. 5. 28. 조정번호 제2013-15호)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투약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상해사고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해 시행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거액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스테로이드 등과 같은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를 상해사고로 인정할 경우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약물부작용 또는 의학적 처치 및 수술 부작용을 모두 환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사고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동안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약물부작용에 의한 신체손상의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스테로이드 약물부작용을 상해사고로 인정한 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1) 상해사고로 인정한 이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 후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사안이 상해사고인지의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① ‘급격성’은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이므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로를 통해 이러한 약물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급격성이 인정되고, ② ‘우연성’은 치료를 위해 복용한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한 혈류장애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전체 투약자의 10~40% 정도이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항목 중 ‘치료

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화학적 물질’ 가운데 분류번호 Y40에서 Y59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해사고로 인정하고 있으며, 환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무혈성 괴사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우연성이 충족되고, ③ 신체 외부에서 투여된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외래성’도 충족되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치료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생긴 상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보아야 한다.

(2) 소결

이 판례에서는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환자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급격성과 우연성이 충족되고 신체 외부에서 장기간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성까지 충족되어 상해보험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2. 7. 24. 조정번호 제2012-19호

(1) 상해사고로 인정한 이유

피보험자는 2008년 8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2개월간 총 18회에 걸쳐 두드러기로 인하여 피부과에 통원치료를 한 후 2011년 5월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및 고관절 골수 이식술을 받은 후 상해 후유장애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급격성’은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약물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계속 누적되어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급격성이 인정된다.

②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이 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 사고의 원인과 결과 중 어느 한쪽에 우연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로써 충분하다 할 것인데, 피보험자의 사고는 우연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사고의 결과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우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③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되는 것인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스테로이드제라면 외래성 또한 인정된다.

(2) 소결

이 조정사례에서는 약물부작용에 의한 신체손상을 상해사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물부작용과 신체손상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스테로이드의 경우 사용된 스테로이드의 최고 용량, 하루 사용 용량, 축적 용량, 사용 기간 등이 중요한 위험요소 인데 피보험자는 스테로이드 약물복용량이 하루 8mg씩 총 32일에 걸쳐 복용하여 총 축적량이 256mg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최소위험용량에 비해 아주 소량이거나 단기간에 걸쳐 투약되었으며, 복용 중단 후 2년 8개월 가량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3. 5. 28. 조정번호 제2013-15호

(1) 상해사고로 인정한 이유

2008년 11월 성상세포종 진단을 받고 두부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2009년 2월 뇌종양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심한 뇌부종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으나 2012년 8월 고관절 대퇴골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① ‘급격성’은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약물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계속 누적되어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무혈성괴사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급격성이 인정된다.

②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이 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고의 원인과 결과 중 어느 한 쪽에 우연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로써 충분하다 할 것인데, 사고의 원인이 우연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결과는 피보험자가 당초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연성이 충족된다.

③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피보험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외래성도 충족된다.

또한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④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의 의미는 특정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이 통상의 경우 보다 높다면 약관상 상해사고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상해보험의 당연한 특성을 다시 부연 설명한 것으로서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2) 소결

이 조정사례에서는 뇌종양수술 및 두부 방사선 치료후 발생한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그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사고는 약물의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환자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급격성이 충족되고, 무혈성 괴사는 환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우연성도 충족되며, 무혈성괴사가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해사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상해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Ⅲ. 약물부작용 신체손상과 상해사고에 대한 약관해석

1. 생명보험의 재해와 의료처치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에서 ‘재해’에 포함되는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의 합병증(Y40~Y84)’의 범위에는 ①내과 치료장치의 합병증이나 ②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에게 발생한 재난, ③모든 유해작용의 원인이 된 치료 또는 예방적 용량으로 정당하게 투여된 올바른 약물, ④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가 포함되지만, 불의의 약물과량투여, 잘못된 약물복용 또는 착오복용(X40~X44)은 제외된다.²⁾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의 합병증(Y40~Y84)’과 관련된 분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에 대한 분류로서 ‘Y40~Y59’까지 분류한다. 여기에는 전신항생제(Y40), 항기생충제(Y41), 갑상선호르몬 및 대치물(Y42.1), 진통제, 해열제 및 항염증제(Y45), 진정제, 수면제 등(Y47), 마취제 등(Y48)과 같은 약물의 정당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중 약물, 약제 및 생물학 제제의 투약기술상 사고’로서 Y60~Y69로 분류한다. 즉, 약물의 정상적인 투여의 결과로 생긴 부작용이 아니라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생긴 비의도적 절단, 천자 또는 출혈(Y6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에 체내에 불의로 남겨진 이물(Y61)’,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용량의 착오(Y63)’, 등과 같은 기술상의 사고를 분류한다.

셋째는 ‘진단 및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사건과 관련된 의료장치(Y70~Y82)’로서 주로 의료장치의 고장이나 기능이상으로 인한 경우에 분류한다.

넷째는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이다. 생명보험의 재해에서는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2) 통계청·대한의무기록협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2015, p.1041.

다시 말해,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재해사고로 보아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분류기호의 분류는 환자의 주증상 또는 의료자원의 활용이 가장 많은 진단을 주진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기준으로 질병을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골괴사를 표기하는 M87을 기준으로 괴사의 원인이 약물이라 한다면 M87.1(약물에 의한 골괴사, Osteonecrosis due to drugs)로 분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약물 분류를 확인코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외인분류번호를 따라 분류해야하는데, 이 경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인 안드로겐(Androgen)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 분류기준에 따라 Y42.7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주진단에 따른 부가적인 세부 설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질병분류기호를 명기할 때는 약물에 의한 무혈성 괴사이므로 M87.1을 사용³⁾해야 한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M87.1)는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사고(S00~Y84)로 보기 어렵다.

2. 손해보험의 상해와 의료처치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입게 된 사고가 상해사고인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과 신체손상 그리고 인과관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고를 상해사고로 인정한다면, 피보험자가 모르는 사이에 모기에 물리고, 이로 인하여 말라리아를 앓게 된 경우까지도 상해사고로 인정해야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3) 통계청·대한의무기록협회, 앞의 책, p.640.

따라서 여기서는 상해사고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의미와 함께 사례로 제시된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경우를 상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급격성의 의미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급격한 사고’의 의미는 ① 신체손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완만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되는 사고로부터 결과가 되는 신체의 손상까지의 과정이 직접적이며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이라는 견해⁴⁾와 ② 급격성은 시간적으로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견해⁵⁾가 있다.⁶⁾

이 중 어느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급격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손상까지 피보험자가 주관적 입장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인지의 여부이다. 여기에서의 ‘비교적 단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신속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사고의 발생 자체를 피할 수 없을 만큼의 불가피한 상태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급격성이라는 것은 상해사건의 ‘발생’과 그 작용의 급격성을 말하는 것이지 상해사고의 ‘결과’로 인한 신체의 상해 자체가 급격하게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⁷⁾

이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상해의 발생이 예견이나 피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예견할 수 없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고, 영미 법계에서는 ‘점진적이고 일정한 기간을 지나 강도를 더하는 사고의 원인과 구별되는 사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⁸⁾

앞서 언급한 어느 요건을 적용하더라도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의 장기 복용 부작용으로 인한 무혈성 괴사는 상해사고의 급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4) 서울지방법원 2002. 2. 14. 선고 2001가단98159 판결.

5) 양승규, 보험법 제3판, 삼지원, 1999, p.484.

6) 임동섭, 현장에서 활용하는 손해사정실무(제3보험편), 보험연수원, 2015, p.379.

7) 유관우·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석, 엘림지앤피, 2006, p.243.

8) 심문보, 앞의 책, p.28.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4. 7. 9. 선고 2003나 37183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13. 5. 28. 조정번호 제2013-15호)에서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약물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계속 누적되어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급격하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하고 있다.

그러나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이유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의 장기복용에 따른 것이고 피보험자는 그 약물이 스테로이드 계열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급격한 사고라 보기 어렵다. 만약, 일반적인 환자들이 장기간 투여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부작용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환자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약물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사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투여되고 있는 약물이 의료진의 착오로 잘못 투여되었다거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의학적인 약물 효과 외에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부작용중 하나가 결과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예상치 못한 결과라 보기 어렵다.

2) 우연성의 의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13. 5. 28. 조정번호 제2013-15호)에서는 ‘우연성’이 충족되는 근거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결과는 환자가 당초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우연성을 충족한다” 고 하고 있다.

‘우연한 사고’는 ① 의도하지 않은(unintended) 사고와 ② 예상치 못한(unexpected) 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⁹⁾ 예를 들어, 쌀가마니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쌀가마니를 들어 올리는 행위는 의도한 것이지만 허리를 다칠 것까지는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우연한 사고로 본다.

따라서 ‘우연한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

9) 양진태, “미국의 상해보험약관상 담보위험에 관한 법리”, 손해보험 1997. 2. p.62.

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 를 말한다.¹⁰⁾ 의료처치과정 중에서 발생한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보기 위해서는 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진료의사의 과실로 인해 설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래 의도했던 약물외의 다른 약물 등이 투여되었다거나 일정 분량만큼의 투여를 의도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만큼의 약물이 과다 투여된 사고처럼 '의료사고' 등으로 표현되는 정도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의도하지 않는다. 오로지 약물투여 등으로 인해 최대한 단기간 내에 부작용 없이 회복되기를 희망할 것인데, 단지 약물 투여의 결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우연한 사고로 볼 수는 없다.

우연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그 발생 원인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¹¹⁾ 자의에 의해 발생된 후 피보험자가 그 의사를 바꾸어 신체의 상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하여도 우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¹²⁾ 즉 우연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적 피보험자' 가 아닌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로 보아 '주관적 기준' 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의료처치 과정에서 진료 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의해 처방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우연한 사고' 로 보기 어렵다.

만약, 치료과정에서 투여한 약물 '부작용' 을 환자가 의도하지 않았고 환자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상해사고로 인정한다면, ① 여성호르몬 분비저하로 갱년기 증상이 있는 여성에게 여성호르몬 투여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 ②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제거한 환자에게 투여한 갑상선 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또는 기능저하증이 발생한 경우, ③ 고혈압 약을 장기간 복용한 후 신장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신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게 된 경우, ④ 대장암 수술치료 후 발생한 대장염증으로 재수술 또는 대장 전체를 절제한 경우 등 치료과정이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작용을 상해사고로 인정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11) 노일석, “상해보험에 있어 상해의 개념”, 보험법연구1, p.261.

12) 유관우·이현열, 앞의 책, p.245.

따라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우연한 사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환자 측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②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 외의 다른 치료방법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확실히 예상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를 의료진이 부당하게 사용했음을 입증하거나 ③ 환자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의 1일 적정 투여량 또는 장기간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이상의 처방을 내림으로써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비정상적인 분량을 과다 투여했음을 입증하거나 ④ 의학적으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를 투여할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질병 치료 및 증상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투여하고 그 결과로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부작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3) 외래성의 의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13. 5. 28. 조정번호 제2013-15호)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원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래성이 충족한다’고 하고 있다.

‘외래성’이란 사고의 원인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¹³⁾ 외래성은 신체적 결함(physical defect)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상해의 원인이 외래적인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상해 자체가 몸 밖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¹⁴⁾ 반드시 유형적·물리적 일 필요는 없다.¹⁵⁾ 즉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¹⁶⁾ 따라서 고혈압이 원인

13) 임동섭, 앞의 책, p.385.

14) 양승규, 앞의 책, p.485.

15) 유관우·이현열, 앞의 책, p.246.

1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대법원 2001. 12. 26. 선고 2001다70610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체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고원인이 신체 내부적인 것으로서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¹⁷⁾

그렇다면 신체외부에서 신체내부로 가해지는 모든 것을 상해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려 공수병이 발생한 경우, 말벌에 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독사에게 물려 사망하는 경우,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요리해 먹고 사망한 경우, 복어의 독을 섭취하여 전신마비 증상에 이른 경우 등은 상해사고로 인정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본뇌염 모기에 물려 뇌염에 걸린 경우, 길을 걷다가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 감기와 폐렴에 걸린 경우까지를 단지 신체 외부에서 가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외래성’을 인정하여 상해사고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래의 사고를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의 사고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¹⁸⁾ 영국의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외래성(external)과 더불어 ‘눈으로 볼 수 있는(visible) 사고’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병균에 의한 신체손상을 배제하기 위해 ‘visible’이라는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신체 외부로부터 세균의 침입으로 인해 생긴 질병은 상해사고에서 제외한다.¹⁹⁾ 즉 상해사고에서 외래성을 요하는 것은 신체의 상해가 외부적인 사고에 기인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하기 위한 것이므로²⁰⁾ 신체손상의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신체 내부로 가해졌다고 하여 이를 모두 외래성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질병의 치료를 위해 투여한 약물부작용을 ‘외래성’을 충족한 상해사고로 인정한다면, ① 만성피로 등의 치료를 위해 섭취한 한약 부작용으로 인해 독성간염이 생긴 경우, ② 헬스클럽에서 체지방 분해를 돕는다는 근육발달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였다가 탈모가 발생한 경우, ③ 조울증약의 장기투여로 인해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생한 경우, ④ 고혈압약을 장기간 투약한 이후 신장기능

17) 서울고등법원 2002. 2. 1. 선고 2001나 57442 판결.

18)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 58083 판결.

19) 심문보, 앞의 책, p.32.

20) 유관우·이현열, 앞의 책, p.246.

이 상실된 경우 까지를 모두 상해사고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동남아를 여행한 후 갑자기 말라리아나 뎅기열에 걸렸다면 이는 여행기간 중 언제인가는 모기라는 외래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외관상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가 투여된 것은 ‘외래에서 가해진 것’은 맞지만 단지 약물이 투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인과관계의 의미

상해보험에서 사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손상은 신체의 내·외부를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신체의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²¹⁾ 강이나 바다에서의 익수사고나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기에 의해 질식하는 사고 등도 신체손상으로 본다. 신체손상의 범위에는 육체적 상해는 물론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정신적 상해도 포함한다.

신체손상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손상을 말한다. 상당인과관계란 일정한 사실이 어떤 결과를 발생하게 한 조건을 구성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특정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일상경험에서 판단하여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만을 상당조건으로 간주하여 그 상당조건만을 결과의 원인으로 한다는 설로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설이다.²²⁾

상당인과관계는 특정 원인 A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B라는 결과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하면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골절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특정 원인이 주어지는 경우 거의 대부분에서 특정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상당인과관계라 한다.

상해보험의 상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신체손상’

21) 이재복··임동섭, 실무자를 위한 제3보험 손해사정론, 두남, 2011, p.187.

22) 임동섭, 앞의 책, p.385.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므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한 모든 환자나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 투여’라는 원인이 있었고 일부 환자들에게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으니 이 역시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보균자가 간경화와 간암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B형 간염 보균’과 ‘간암으로 인한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B형 간염 보균자였으니 간경화로 진행이 되었고, 간경화라는 선행조건이 있었으니 간암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만, ‘간암으로 사망한 모든 사람’ 또는 ‘간경화를 앓던 모든 사람’이 ‘B형 간염 보균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B형 간염 보균자의 10~15% 정도만이 간경화를 거쳐 간암에 이르는 만큼 ‘B형 간염보균 진단’과 ‘간경화’ 또는 ‘간암’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투여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골수 이식환자의 3~10% 정도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면책약관에서 정한 ‘그 밖의 의료처치’의 의미

2010년 4월 1일 이전에 적용되던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상해사고에서 제외하는 면책 요건 중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제시하고 있다. 상해보험의 면책사유로 제시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의 의미는 ‘마취제의 투약처럼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치만을 의미한다.²³⁾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및 기타 의료처

23)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²⁴⁾

따라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 행해지는 약물투약을 포함한 일련의 의료처치 모두가 상해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의료사고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²⁵⁾ 모두 상해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IV. 끝내는 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재해’의 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의 ‘상해’는 개별 사안별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해사고는 ‘다쳤다’라는 표현이 가장 쉽게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신체손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된 경우 상당액의 의료비와 거액의 후유장해보험금과도 관련 된다.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상해사고인지의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가 있으나 모두 급격성과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을 충족하는 ‘상해’ 사고로 보았다. 그 결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 투여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투여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모두 상해사고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손상은 모두 상해사고라는 오해까지 낳게 되었다.

2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25)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그러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명보험의 재해사고 및 손해보험의 상해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생명보험의 재해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어야 하는데,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골괴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M87.1(약물에 의한 골괴사, Osteonecrosis due to drugs)로서 생명보험의 재해사고(S00~Y84)로 볼 수 없다.

둘째, 법원의 판결과 분쟁조정사례에서는 약물 부작용이 장기간 복용의 결과 누적되었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성을 충족한다고 보았으나, 복용하는 약물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라는 것을 의사의 처방당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 약을 구입할 당시에 약사에 의해서 설명되어 예상치 못하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약물효과 외에 의학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일정량 이상 투여할 경우 발생가능한 여러 부작용 중 하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견치 못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결과는 환자가 당초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우연성을 충족한다는 분쟁조정사례는 약물 투여의 결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분쟁조정사례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신체 내부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외래성을 충족하는 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외래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유무형의 물리력 외에도 명백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이어야 하므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가 투여된 것이 ‘외래에서 가해진 것’은 맞지만 단지 약물이 투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나 뇌부종 등의 질병치료를 위해 장기간 투여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판결례집, 금융감독원, 2004. 12. pp.94~101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보험), Vol.2, 금융감독원, 2013. 12. pp. 499~507.
- 노일석, “상해보험에 있어 상해의 개념”, 보험법연구1, 1995.
- 심문보, 상해보험사정실무,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 1988.
- 양승규, 보험법 제3판, 삼지원, 1999.
- 양진태, “미국의 상해보험 상해보험약관상 담보위험에 관한 법리”, 손해보험, 1997.
- 유관우·이현열,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인보험약관해석, 엘림지앤피, 2006.
- 이재복·임동섭, 실무자를 위한 제3보험실무, 두남출판사, 2011.
- 이현열, “개정 표준약관 개관”, 보험법연구 Vol.4 No. 2, 한국보험법학회, 2010, pp.137-165.
- 임동섭, 현장에서 활용하는 손해사정실무 제3보험편, 보험연수원, 2015.
- 통계청·대한의무기록협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2015.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대법원 www.glaw.scourt.go.kr

Abstract

Insurable risk of Accident insurance is “injury caused by violent, accidental, external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as a requirement. The ‘disaster’ of life insurance can be judged by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but the cause of deathclassification ‘bodily injury’ in the non-life insurance shall determine suitability for each individual case.

If you avascular necrosis is caused by the side effects of steroid drugs to the Department of arthroplasty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dispute settlement case all seen as “injury” accidents and contingencies that meet the external.

However, steroid avascular necrosis due to drug side effects can not be seen as disaster(S00~Y84) of Life Insurance because it is classified as a M87.1 in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You can not generally see the drug of the steroid series, not caused side effects unexpected medically addition to the drug effect is expected to unexpected foreseen accident since occurred, one of the many side effects that may occur when took over a long period of time a certain amount meets the violent I can not see that. Also, you can not see that drus did not intend the possible side effects as a result of the drug accidental are met, just hard to see that the only reason that the drug meets the ‘external’.

Therefore, avascular necrosis caused by long-term side effects of drugs administered steroid-based treatment for diseases such as myelodysplastic syndrome or cerebral edema can not be seen talking to injuries in accident insurance.

※ Key words : accident, disaster, violent, unintended, external, bodily injury, medical errors, steroids, side effect, indemnity